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52
----------	------

2021년 4월 2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2021년 04월 29일 상정, 수정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웅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나. 적극행정위원회 (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안 제4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민간위원은 위원의 2분의 1이상)
-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함
- 위원은 공공·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해야 함

라. 위원회의 운영 (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회의소집, 위원장의 직무대리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위원으로 구성 성별·민간위원수(2분의 1이상) 고려

마.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사. 간사 (안 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아. 비밀누설 금지 (안 제9조)

-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자. 운영세칙 (안 10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52호로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하고자 제출되었는바, 입법취지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많이 지연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의1)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의 지정, 제8조의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교육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직접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임사항 등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안 제·개정과 별개로 직접 의무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해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2)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서³⁾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서⁴⁾ 위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자치입법 업무매뉴얼(2020년판)’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실행계획 수립의 ‘주기(週期)’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과 표창 수여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적극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실행계획의 수립 역시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週期)’를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고 함으로써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수를 9명이상 4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보다 내실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 사료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소집권한을 부교육감에만 부여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회의 소집권한을 일정 수 이상의 민간위원의 요청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⁵⁾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및 제5조).

Ⅶ.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5) 참고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회의 소집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통보는 장관이 수행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한 추진 일정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52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9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I. 수정이유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및 제5조).

II.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해야”를 “매년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u>수립·시행해야</u>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u>매년 수립·시행해야</u> 한다.</p> <p>② ~ ③ (조례안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u>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u></p> <p>③ ~ ④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p> <p>③ ~ ④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